



안전인증소식

[Q&A]**전기용품 안전인증**

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 1월 1일부터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KC마크, 자율안전확인제도」 등이 신규 운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을 기술표준원에서 응답한 내용을 꼭 숙지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질의응답을 계제하오니 전기용품제조·수입 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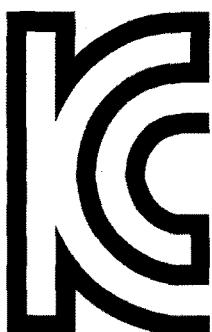
※ 주의 : 본 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협회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Question KPS와 KC에 대한 문의

2010년 1월 이후에 자율안전확인 인증을 받은 상품은 당연히 KC 마크를 부착해야 하지만 2010년 이전에 자율안전확인 인증을 받은 물티슈(자율안전확인)는 기존의 KPS 마크 표기된 상품이라 할지라도 2011.6까지 판매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안전인증이나 자율안전확인등의 인증의 유효기간은 어디서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A nswer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인 물티슈의 'KPS마크와 KC 병행표기 방법'과 '인증의 유효기간' 관련된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물티슈는 '09년 7월 1일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서 자율안전확인 대상공산품으로 변경된 공산품으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동일 모델일 경우 별도의 시험검사없이 자율안전확인 신고



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KC마크표기 관련하여서는 2011.1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KPS와 KC마크 사용을 병행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일 KC신고가 안되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인증의 유효기간과 관련하여 자율안전확인품목은 동일 모델인 경우 유효기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Q uestion 완구 모델의 정의에 대한 문의

완구는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라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를 받아 당해 공산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중 모델의 정의와 관련하여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36(완구편)을 보면, "5.1 모델의 구분 : 완구의 모델은 종류별, 재질별로 구분한다. 다만, 블록완구는 기본 구성별로 모델을 구분 한다. 또한 재료시험을 위한 합성수지, 도료, 원단 등 재질의 색상만 다른 경우에는 동일 모델로 간주하되 재질만 별도의 시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동일 모델로 볼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1. 종류 및 재질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2. 블록완구는 기본 구성별로 모델은 구분한다고 했는데, 기본 구성별이 무엇인지?

3. 동일 공장에서 동일 재질(목재), 동일 색상(도료)을 사용한 모양이 전혀 다른 품목은 동일 모델로 볼 수 있는지요?

⇒ 딸랑이와 오뚜기처럼 전혀 모양이 다르나, 동일공장에서 동일재질(고무나무), 동일 색상(노란색)인 경우 동일 모델인지?

5. 다른공장 동일 재질(목재), 동일 색상(도료), 동일모양인 경우 동일 모델로 볼 수 있는지요? 여기서 더 나아가 공장이 속한 나라가 다르면 어떻게 되는지요?

⇒ 당초 자율안전확인신고는 A공장에서 생산한 노란색 고무나무재질 오뚜기인데, B공장에서 생산할 경우 동일 모델로 보아,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아니해도 되는지?

6. 동일공장, 동일재질(목재), 동일 모양인데 색상(도료)만 다른 경우에는 위 규정처럼 동일 모델로 보되, 색상에 대해서는 추가 시험을 받아야 겠지요?

⇒ 동일공장, 고무나무로 만든 오뚜기인데, 뺨간색 오뚜기와 노란색 오뚜기가 있을 경우 동일 모델로는 볼 수 있으나, 색상에 대해서는 추가 시험을 받아야 하는지?

7. 구체적인 질문으로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하였으며, 여러개의 판을 합친후 만든 노란색 목재 퍼즐과 노란색 원목 오뚜기는 동일 모델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공산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원구 모델의 정의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원구의 종류별의 의미는 작동원구(전기, 관성, 태엽)와 비작동원구로 구분하고, 사용연령에 따라 3세미만, 3세이상 8세미만, 8세이상으로 구분하며, 원구의 특성에 따라 물놀이 원구, 빨사체 원구, 접힘장치 및 경첩이 있는 원구, 놀이용가구, 잡아당기는 원구, 모조보호장구 및 머리에 쓰는 원구, 중천원구, 원구자전거, 원구상자, 귀에 가까이 대고 사용하는 원구, 음향원구, 손으로 쥐는 원구, 유아용 체력기구, 유아용 침대, 유모차등 부착원구, 유아용 놀이모형, 원구젖꼭지, 풍선, 팽창형 원구, 블록원구, 모빌, 승용원구, 액체 충전원구, 입으로 작동되는 원구, 의상원구, 어린이가 들어가는 원구, 활동원구(미끄럼틀, 그네, 시소 등), 모형 점토 및 놀이용 점토, 접착성의 모형 문신, 프라모델 등으로 구분합니다.

나. 재질별의 의미는 원구를 구성하는 재질을 의미하며, 섬유제, 종이제, 플라스틱제, 목제, 금속제 등으로 구분합니다.

다. 블록원구의 기본구성별의 의미는 블록원구는 일반적으로 재질이 동일하고 블록의 모양도 유사하나, 제조사가 의도한 완성된 제품의 형태에 따라 제품을 이루는 블록의 모양, 부품 등에 차이가 있어 제조사가 구분한 시리즈별로 구분합니다.

라. 동일공장에서 동일 재질, 동일 색상을 사용하고 모양만 다를 경우 동일 모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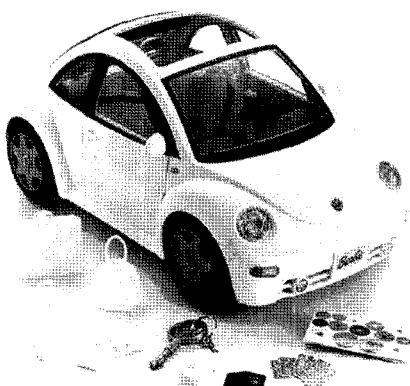
마. 제품의 재질, 색상, 모양이 같고 제조업자와 제조국이 같고 공장이 다를 경우 동일모델이며, 제조국이 다를 경우에는 외국 제조업체로 분류되기 때문에 동일모델이 아닙니다.

바. 국내 제조업자가 동일 공장, 동일 재질, 동일 모양인데 색상이 다른 제품을 생산할 경우에는 동일 모델로 간주하며, 색상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재질 시험을 하여야 합니다.

사. 동일 공장에서 여러 장의 판을 합친 후 만

든 노란색 목재퍼즐과 노란색 원목 오뚜기 가 동일모델인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는 제품의 사진 등 상세한 자료부족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사용한 재질과 도료가 동일 하다면 동일모델로 간주 할 수 있습니다.

아. 위의 라~사 항에 해당되어도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는 품공법 제19조에 따라 수입자별 또는 제조자별로 받게 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uestion LED 실내조명용 램프와 LED 가로등 관련 안전인증 문의

당사는 할로겐이나 백열등 대체용으로 LED램프를 만들고자 하는데 220V AC전원을 받아 DC로 구동하고자 합니다. 삼파장램프와 같이 전원부를 일체형으로 할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LED 가로등을 만들 때 가로등헤더에 SMPS를 내장할 경우 강제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nswer

LED 램프는 컨버터 분리형이나 컨버터 일체형이나 모두 안전인증 대상이 아니므로 할로겐이나 백열등 대체용 LED 램프는 안전인증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 램프를 장착하기 위한 조명기구는 안전인증 대상입니다. 실외에 사용하는 LED 가로등의 경우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동 램프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원장치는 조명기구용 컨버터에 해당되므로 안전인증 대상입니다. 참고로 LED램프는 2009.1.1일부터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지정되었으며, 새롭게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지정되는 전기용품은 2010.1.1일 이후 출고(통관) 전에 안전인증기관에서 자율안전확인신고 후 판매가 가능합니다.

Q uestion 냉온수 기능이 없이 필터에 의한 정수기의 인증대상 여부

당사는 가정용 정수기 생산업체로 금번에 개발한 정수기의 흐름도는 필터 1(활성탄) → 필터 2(세라믹) → 필터 3(자외선 살균램프)이고, 냉/온수기능은 없으며 필터를 통해 정수하여 음용할 수 있는 정수기입니다.

전기장치부분은 필터 교체시를 표시하는 LED와 자외선 살균램프(4W)를 장착하여 사용하고 자외선 살균램프의 안정기는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데 별도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nswer

냉/온수기능 없이 활성탄 필터와 세라믹 필터만 이용한 정수기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 규칙 제3조 별표3의 규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해당됩니다.